#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공개대상정보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비고 |
|---|---|---|---|---|
| 기획조정실 | 신규사업개발 | 법인의 영업·경영상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 | 제7호 | |
| 공제사업부 | 공제등록 및 사고처리현황 | 이름·주민등록등 개인정보<br>법인의 영업·경영상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 | 제6호<br>제7호 | |
| 자산운용부 | 자금운용계획 | 법인의 영업·경영상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 | 제7호 | |
| | 자금조치계획 | 법인의 영업·경영상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 | 제7호 | |
| | 투자위원회개최 | 법인의 영업·경영상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 | 제7호 | |
| 경영지원실 | 인사 및 복무관리 | 이름·주민등록등 개인정보 | 제6호 | |
| | 웹사이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 이름·주민등록등 개인정보 | 제6호 | |
| | 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업무 | 이름·주민등록등 개인정보 | 제6호 | |
| | 임·직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업무 | 이름·주민등록등 개인정보 | 제6호 | |
| 감 사 실 | 임원 재산등록 업무 | 이름·주민등록등 개인정보 | 제6호 | |

**※ 근거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6.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7. 법인의 경영 · 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비공개대상 정보범위 세부기준

## 6.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① 공제사업부의 공제등록 및 사고처리현황에 기재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비공개(헌법 제17조)

② 경영지원실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기재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비공개(헌법 제17조)

③ 경영지원실의 웹사이트에 등록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비공개(헌법 제17조)

④ 경영지원실의 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업무에 기재된 이름 및 주민등록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비공개(헌법 제17조)

⑤ 경영지원실의 임 · 직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업무에 기재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비공개(헌법 제17조)

## 7. 법인의 경영 · 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① 기획조정실 신규사업개발의 정보는 법인의 영업 · 경영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

**② 공제사업부 공제등록 및 사고처리현황의 정보는 법인의 영업 · 경영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

**③ 자산운용부 자금운용계획은 법인의 영업 · 경영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

**④ 자산운용부 자금조치계획은 법인의 영업 · 경영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

**⑤ 자산운용부 투자위원회개최의 정보는 법인의 영업 · 경영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